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 안

의안 번호 159

제출연월일 : 2003. 09.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지하수의 오염 및 고갈방지와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법의 전문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역의 지하수보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등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다. 지하수의 보전·관리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라. 지하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지하수법 제5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27조제2항, 제40조, 제44조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2항 나. 입법예고: 2003. 06. 20 ~ 07. 09 / 제출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지하수조례 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하수의 조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수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 2. 지하수의 수위분포
 -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 4. 지하수의 수질특성
 - 5.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 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지하수관측시설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지하수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지하수의 수위 및 수질 등을 장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하수관측시설 (이하 "보조관측망"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보조관측망의 설치는 지하수의 이용실태와 수질환경을 고려하여 적정수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권한을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산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산정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하수관리계획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 제6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시 의회의원
 -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조교수이상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 3.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소속 임직원
 - 4. 수리지질, 응용지질, 수문, 환경, 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자
- ④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장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9조(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담당사무관이 된다.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영 제4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부과기준은 영 제44조제3항 별표8의 기준에 의한다.
- ③과태료의 부과 ㆍ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하수법을 적용 한다

관계법령

□ 지하수법

제5조(지하수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조사를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하수의 관측 및 조사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적인 지하수 관측시설(이하" 국가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안의 지하수 수위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국가관측망을 보완하는 지역지하수관측시설(이하 "보조관측망"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관측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측망의 위치, 구조도, 측정장비 등이 포함된 보조관측망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등)①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지하수법 시행령

제27조(지하수 수위변동실태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관측망을 전국의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전국에 300개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국가관측망별로 매일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지하수 수위관측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관측망을 관할 구역의 지하수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조관측망별로 매월 1회 이상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하여야 한다.

제40조(지하수관리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 2.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 ③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이하"시·군"이라 한다)에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를 둔다.
 - 1.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2. 제2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3.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 4. 그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④제1항이 규정에 의한 중앙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 제4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로 정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 제17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①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1.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등의 제거·절단비용과 되메움비용
 - 2.그밖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거·절단비용 및 되메움비용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굴착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가감할 수있다.